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2. 8. 28.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 정 : 2002. 9. 7
 - 심사 및 의결 : 2002. 9. 7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요청.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예 산 액 (세 입) | 예산현액 | 결 산 액 | | |
|---------------|-----------------|-----------------|-----------------|-----------------|-----------------|
| | | | 세 입 (수납액) | 세 출 (지출액) | 잉 여 금 |
| 계 | 596,404,796,000 | 692,415,538,095 | 725,452,808,529 | 519,946,641,944 | 205,506,166,585 |
| 일반회계 | 431,716,037,000 | 513,386,726,290 | 528,567,762,253 | 395,546,778,370 | 133,020,983,883 |
| 특별회계 | 164,688,759,000 | 179,028,861,805 | 196,885,046,276 | 124,399,863,574 | 72,485,182,702 |
| 공 기 업 특별회계 | 92,675,180,000 | 103,381,696,315 | 115,784,426,683 | 81,217,013,700 | 34,567,412,983 |
| 기 타 특별회계 | 72,013,579,000 | 75,647,165,490 | 81,100,619,593 | 43,182,849,874 | 37,917,769,719 |

3.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 략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 |
|-----------|-----------------------|
| 의안번호 | 제17호 |
| 의결 년월일 | 2002. 9. 10 (제99회) |

제출년월일 : 2002. 8. 2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 125조(결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주요골자

- 2001년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붙임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천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 진



위 원 임 성



위 원 정 길



위 원 이 상



위 원 김 태



1. 총 평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편리성에 의하여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지적되고 건의한 것들이 이제 결실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2001년도 결산검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상경비의 통장잔액 ZERO화야 말로 부천시가 이룩한 업적 중에 하나라 생각되며, 세출분야에서의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의 결산검사위원의 예리한 지적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와 전산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느껴진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시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약간 높음으로써 세외수입 관련업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미 원미구청에서 2000년에 시행된 불필요한 체납액 정리(결손처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회수 가능 자료의 파악이 필요하며, 2002년에 원미구청에서 시행중인 체납정리교육 또한 전체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세수증대의 여지가 많은 수입분야가 공무원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여겨진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지표를 임의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0년도에도 지적하였듯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평가 및 실시와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만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끝으로, 2002년도의 복식부기 시범운영으로 앞으로는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성과측정 및 재정진단으로 바람직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큰일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참고적으로 재정진단을 임의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는바 업무에 적극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성과측정 및 재정진단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1. 2001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596,404,79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5,452,808,529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692,415,588,095원(전년도 이월금 96,010,792,095원 포함)
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946,641,944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205,506,166,58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05,506,166,58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
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9,585,593,580원
 - 사고이월 5,374,828,345원
 - 계속비이월 85,186,859,96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525,427,93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833,456,764원이다.

2. 2001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431,716,03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8,567,762,253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513,386,726,290원(전년도 이월금 81,670,689,290원 포함)
에 대하여
지출액은 395,546,778,37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133,020,983,88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33,020,983,883원은 다음연도
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753,290,470원
 - 사고이월 2,280,322,150원
 - 계속비이월 75,969,728,96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65,907,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51,735,173원이다.

3.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 164,688,75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885,046,276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179,028,861,805원(전년도 이월금 14,340,102,805원 포함)
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399,863,574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72,485,182,70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2,485,182,70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
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832,303,110원
 - 사고이월 3,094,506,195원
 - 계속비이월 9,217,131,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59,520,8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81,721,591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72,013,57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100,619,593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75,647,165,490원(전년도 이월금 3,633,586,490원 포함)
에 대하여
지출액은 43,182,849,874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37,917,769,7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0원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7,917,769,71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740,308,110원
 - 사고이월 218,168,250원
 - 계속비이월 6,720,588,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57,214,8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81,490,553원이다.

1)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3,97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27,602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43,97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31,43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996,17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
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4,996,172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34,996,172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31,377,38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377,787,180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31,377,38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48,170,924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9,616,2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29,616,25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7,214,8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401,450원이다.

3)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304,6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754,300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304,6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00,00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307,754,3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07,754,3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7,754,300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2,979,7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02,961,859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15,659,837,610원(전년도 이월금 2,680,112,6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45,933,31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20,257,028,54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0,257,028,54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51,422,630원
 - 사고이월 218,168,25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87,437,669원이다.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79,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515,506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679,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16,000,00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410,515,50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01,515,50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515,506원이다.

6)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9,829,73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28,823,971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20,783,209,880(전년도 이월금 953,473,8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36,847,21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9,491,976,7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9,491,976,761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588,885,48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6,720,588,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2,503,281원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799,15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86,049,175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6,799,153,000(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67,00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7,285,882,17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285,882,17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85,882,175원이다.

3. 일반회계 재무상태의 검토

□ 목 적

전년도 결산 감사시 시의 일반회계에 국한한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당기에는 예산의 안정성을 추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전기 및 지난 몇 년간의 추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검토방법

이미 시에서는 재정자립도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며, 이는 첫째, 재무상태의 부실징후를 분석하는 안전성(재무상태의 건전성), 둘째, 장기적인 재무성과의 변동을 예측하는 성장성, 셋째, 세입세출의 수지를 살펴보는 수익성(업무의 생산성), 넷째, 예산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산의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안전성(재무상태의 건전성)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수익적인 측면(동태적측면)과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정태적측면)의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였으며, 수익적 측면에서는 총세입중 지방세등 자주재원의 비중과, 경상비, 인건비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검토하였으며,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은 순세계잉여금 잔액의 비율, 지방채 잔액의 비율 및 지방채상환능력과 예산변동율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위:%,천원,회)

| 구분 | 내 용 | '97 | '98 | '99 | 2000 | 2001 | 비고 |
|-------------------|--|--------|--------|--------|--------|--------|----|
| 자주재원비율 |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조금)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지방채발행 제외) | 82.44% | 81.41% | 77.93% | 81.55% | 80.68% | |
| 경상비부담율 |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자주재원 | 49.18% | 70.77% | 78.42% | 65.38% | 66.68% | |
| 인건비부담율 | 인건비/자주재원 | 17.68% | 19.74% | 21.98% | 16.04% | 15.16% | |
| 잔액수지율 | 순세계일여금 /세입총액(전기이월금, 지방채 제외) | 4.57% | 13.31% | 7.63% | 9.04% | 7.86% | |
| 지방채잔액비율 | 지방채잔액 /세입총액(전년도이월금, 지방채 제외) | 9.51% | 19.73% | 30.92% | 34.01% | 33.31% | |
| 지방채상환능력 | 지방채상환액/자주재원 | 1.59% | 1.93% | 1.84% | 1.59% | 2.08% | |
| 시민1인당채무 잔액(천원) | 지방채잔액/시민수 | 40 | 73 | 126 | 168 | 182 | |
| 부자비의 지방채부담율 | 당기지방채발생액/자본적지출액 | 9.08% | 18.90% | 43.44% | 25.00% | 13.67% | |

먼저,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2000년에 81.55%에서 2001년에는 80.68%로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주재원으로의 경상비부담율로 2001년에 66.68%로 악화되도 있고, 자주재원으로의 인건비의 부담률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대하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잔액수지율의 경우에 1997년에 4.57%까지 낮아졌다가 2001년 현재는 7.8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실질순수지율이 균형예산에 가깝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재무상태의 안전성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투자사업의 증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매년 세입 총액에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7.93%에서 2000년에는 34.01%, 2001년 33.31%에 달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잔액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으며, 당기와 전기에는 30%대에서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결국은 상환해야하는 외부차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잔액의 증가는 장래의 예산의 편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잔액수지율의 감소, 자주재원 비율의 감소 및 지방채 잔액의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은 전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방채 상환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지방채 잔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성장성

성장성은 동태적인 접근으로 직전회계연도의 변동율과 그 추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미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변동과 경제여건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합니다.

성장성의 분석대상은 행정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내적인 부분은 자주재원증가율, 총세입증가율, 잔액수지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재정규모증가율, 투자경비비율 등이며, 외적인 부분은 불변 GDP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검토하였습니다.(단위:%,천원,회)

| 구 분 | 내 용 | '97 | '98 | '99 | 2000 | 2001 | 비고 |
|-------------------|-------------------------------------|---------|---------|---------|---------|---------|----|
| 자주자원증가율 | (당기금액-전기금액)/전기금액 | 3.24% | -14.30% | 5.70% | 26.02% | 10.26% | |
| 총세입증가율 (이월금제외) | (당기세입-전기세입)/전기세입 | 14.18% | -13.21% | 10.41% | 20.43% | 11.45% | |
| 실질수지증가율 | (당기수지율-전기수지율) /전기수지율 | -69.88% | 191.29% | -42.64% | 18.38% | -13.02% | |
| 불변GRDP성장율 | (당기GRDP-전기GRDP) /전기GRDP | 6.98% | 2.77% | n/a | n/a | n/a | |
| 인구증가율 | (당기인구-전기인구)/전기인구 | -0.57% | -1.59% | 0.15% | 0.003% | 0.737% | |
| 지방세증가율 | (당기지방세-전기지방세)/전기지방세 | 4.37% | -0.68% | -3.76% | 13.73% | 13.10% | |
| 투자경비비율 | 자본지출액/당기세출총액 | 47.38% | 47.20% | 34.62% | 38.15% | 34.67% | |
| 재정규모증가율 | 당기총지출예산/전기총지출예산 | 111.19% | 99.67% | 95.87% | 120.59% | 104.13% | |
| 1인당경상경비 증가율 | (당기1인당경상경비-전기1인당경상경비) /전기1인당경상경비 | 7.98% | 25.34% | 16.94% | 5.07% | 11.62% | |

먼저, 행정외적인 부분으로 인구증가율은 2001년도에 0.737%로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와 대비하여도 성장률은 한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불변 GRDP의 경우에는 1998년도 이후의 자료는 없어서 분석의 한계는 있으나 1998년에 2.77%로 소폭 성장에 그치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성숙기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내적인 부분으로는 첫째, 자주자원증가율, 잔액수지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총세입증가율 등은 연도별 변동이 심한 편이나,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자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6.18%, 총세입증가율의 경우에는 연평균증가율이 8.65%, 지방세증가율이 5.35% 정도입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된 투자경비비율, 재정규모증가율 및 1인당 경상경비 증가율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였으며, 재정규모증가율의 경우 2001년에 104.13%로 소규모 증가하였으나, 1인당 경상경비 증가율은 2001년에 11.62%로 전기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높아 졌습니다.

또한, 투자경비비율이 세출총액의 연평균 34.6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은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은 행정외적으로는 정채단계에 있으나, 행정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행정규모의 증가가 보다 크므로 부담이 되나, 투자경비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익성(생산성)

수익성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생산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의 분석은 자주자원증가율과 세출결산증가율을 비교하는 재정압박지수,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실질수지율과 경상수지를 이용한 이자보상비율 및 불용액 비율등을 이용하였습니다.(단위:%,천원,회)

| 구분 | 내용 | '97 | '98 | '99 | 2000 | 2001 | 비고 |
|----------------|---|---------|---------|---------|--------|--------|----|
| 주민1인당 지방세비율 | 지방세수납액/주민수 | 168 | 169 | 163 | 185 | 208 | |
| 재정압박지수 | 자주재원증가율-세출결산증가율 | -21.23% | -25.97% | 14.01% | -0.28% | 8.31% | |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수납액/지방세징수결외액 | 92.54% | 89.79% | 90.21% | 92.28% | 93.83% | |
| 세외수입증가율 | (당기세외수입-전기세외수입) /전기세외수입(이월금제외, 재정보전금포함) | 2.19% | -27.05% | 17.76% | 38.83% | 7.83% | |
| 실질수지율 |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액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제외) | -8.72% | 8.04% | -4.42% | 2.70% | -0.25% | |
| 지방세/세외수입비율 | 지방세수납액 /세외수입수납액(재정보전금포함) | 93.71% | 127.58% | 104.26% | 85.41% | 89.59% | |
| 이자보상비율 | 지방채이자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 -(경상경비-지방채이자)) | 0.01 | 0.04 | 0.12 | 0.10 | 0.08 | |
| 비용역비율 | 비용예산/최종세출예산 | 4.87% | 9.40% | 4.21% | 4.75% | 3.86% | |
| 주민1인당 경상경비(천원) | 경상경비/주민수 | 171 | 214 | 250 | 263 | 293 | |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평균 약 5.03%정도 세출결산증가율이 자주재원증가율보다 높으며, 재정보전금을 제외할 경우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과년도분을 제외할 경우에 2001년에 93.83%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율에 해당하는 실질수지율의 경우 연도별 기록이 있으나 2000년에는 2.7%이나 2001년에는 -0.25%로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대비 지방채이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1997년에 0.01에서 2001년에는 0.08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성은 1997년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실질수지율의 변동이 심한 것은 이러한 악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지방채 이자의 부담액 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의 안정성

부천시의 세입세출의 근간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예산의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한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부천시의 중요한 업무에 속하며, 또한 빈번하고 변동이 심한 예산의 편성은 부천시의 재정예약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예산의 변동율과 이월예산의 비율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97 | '98 | '99 | 2000 | 2001 | 비고 |
|-------------|----------------------------------|--------|----------|--------|---------|--------|----|
| 지방세 예산변동율 | (지방세최종예산-지방세최초예산) /지방세최종예산 | 0.12% | 0.00% | 3.92% | 5.93% | 4.37% | |
| 세외수입 예산변동율 | (세외수입최종예산-세외수입최초예산) /세외수입최종예산 | 22.95% | -32.47% | 43.68% | 20.46% | -2.66% | |
| 지방채발행 예산변동율 | (지방채최종예산-지방채최초예산) /지방채최종예산 | 0.56% | 71.55% | 0.88% | 100.00% | 43.20% | |
| 이월예산비율 | (명사이월+사고이월)/최종세출예산 | 8.51% | 3.93% | 2.72% | 2.82% | 5.10% | |
| 예비비비율 | 예비비예산/최종세출예산 | 0.20% | 1.82% | 1.36% | 0.72% | 0.89% | |
| 예비비사용비율 | 예비비비율/최종세출지출액 | 0.15% | 1.19% | 0.27% | 0.31% | 0.23% | |
| 일반회계비율 | 일반회계세출예산/전체세출예산 | 75.44% | 74.90% | 87.44% | 82.86% | 84.09% | |
| 계속비이월액 변동율 | (당기계속비이월액-전기계속비이월액) /당기계속비이월액 | -2.56% | -105.17% | 48.12% | -6.61% | 7.68% | |

먼저 지방세의 세외수입등 세입의 예산변동율을 검토한 바 지방세의 예산액은 최초예산액과 최종예산액과의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의 변동율이 1999년의 43%등 변동이 심하며, 이는 세외수입 예산의 편성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채예산의 변동율도 변동이 심하며, 이는 지방채발행사업이 즉흥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예산의 수립시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2000년의 경우에는 최초예산에는 발행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예산수립시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이나 예비비의 사용 비율은 큰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계속비 이월액의 경우 연도별 변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천시의 사업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검토내용의 요약

시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기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의 수익성과 안전성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여건의 변화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수익성과 안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성의 경우에는 시의 계속비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안정성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채의 안정성이 좋지 않으며, 투자사업이 아직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에도 지적하였듯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평가 및 실시와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만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세입결산

1. 총괄

- 2001년 세입규모는 수납액 기준으로 모두 7,25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86억원으로 73%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969억원으로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위:억원)

| 구분 | 수납액 | | 구성비 | | | |
|-----------|-------|-------|------|------|------|------|
|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 일반회계 | 5,058 | 5,286 | 64% | 100% | 73% | 100% |
| 지방세 | 1,443 | 1,632 | | 29% | | 31% |
| 세의수입 | 2,095 | 1,907 | | 41% | | 36% |
| 교부금, 보조금등 | 1,150 | 1,457 | | 23% | | 28% |
| 지방채 | 370 | 290 | | 7% | | 5% |
| 특별회계 | 2,853 | 1,969 | 36% | 100% | 27% | |
| 공기업 | 2,325 | 1,158 | | 81% | | |
| 기타 | 528 | 811 | | 19% | | |
| 합계 | 7,911 | 7,255 | 100% | | 100% | |

- 일반회계는 지방세(시세)가 1,632억으로 31%를, 세외수입이 1,907억원으로 36%를 교부금등 의존재원수입이 1,457억원으로 28%를 지방채가 290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의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하여 일반회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당기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감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이 종료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과 결손율을 보면 수납율이 90.7%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정도 낮아졌으며, 결손율도 0.2% 높아졌습니다.

| 구 분 | 금액(억원) | | | 비율(%) | | |
|-------|--------|-------|-------|-------|------|------|
| | '99 | 2000 | 2001 | '99 | 2000 | 2001 |
| 징수결정액 | 7,235 | 8,631 | 7,996 | 100 | 100 | 100 |
| 수 납 액 | 6,606 | 7,911 | 7,255 | 91.3 | 91.7 | 90.7 |
| 미 수납액 | 629 | 720 | 741 | 8.7 | 8.3 | 9.3 |
| 결손 처분 | 64 | 57 | 75 | 0.9 | 0.7 | 0.9 |
| 이 월 액 | 565 | 663 | 666 | 7.8 | 7.6 | 8.3 |

- 결론적으로 2001년 회계연도의 경우 2000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문에서는 일부 열악해진 면이 있으며, 따라서 좀더 세원관리 및 체납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II. 운영 및 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

1) 세외수입프로그램의 보완

□ 현실태 및 문제점

- 2001년부터 세외수입의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전산장부에 의해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세외수입프로그램의 결함으로 본청 및 각 구청의 징수부, 체납부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임
- 첫째, 각 구청마다 징수부의 누계금액 오류가 발생하여 출력물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연도폐쇄기의 징수부의 경우는 누계금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불일치로 Excell로 다시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둘째, 본청 및 구청의 각 과별로 전산장부의 운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매월 징수부를 출력하여 결재되는 경우와 징수부를 출력하지 않고 단지 결산검사용으로 출력하는 사례가 발견됨.
- 셋째,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내부오류로 수납대장의 미수납액으로 출력되는 체납자의 경우에 체납부에는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지서등을 출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위 경우는 체납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수납대장과 체납부의 상호대사하여 발견하였으나, 체납자가 다수인 경우는 체납부에 누락할 큰 문제점이 발생함

□ 개선 및 건의사항

- 징수부의 관리는 상부기관의 통일화된 업무지침이 요구됨
- 세외수입프로그램의 내부오류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업체의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담당부서는 개발용역업체의 적절한 보완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징수부 장부의 프로그램상 오류

□ 현 황

- 현재 징수부를 전산으로 입력할 때 입력자들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수부를 관리하고 있음

□ 문 제 점

- 징수부 자체에 일부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세입과 세출결산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건 의 사 항

- 전산회계프로그램은 시와 각 구청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여 일부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징수부를 관리하여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망.

III. 결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

1) 순세계잉여금의 이월예산 조정

□ 현 황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서에 정확한 금액이 표시되며, 따라서 세입예산의 편성 시에 정확한 금액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기의 결산은 결산기 종료후에 이루어지며, 본예산은 전기의 12월경에 확정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편성시 정도에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시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실제이월금 | 본예산 | 1차(4.24) | 2차(7.14) | 3차(11.13) | 4차(12.24) |
|-------|----------------|----------------|----------------|----------------|----------------|----------------|
| 일반회계 | 34,714,280,901 | 22,000,000,000 | 22,000,000,000 | 34,714,280,000 | 34,714,280,000 | 34,714,280,000 |
| 주택사업 | 34,393,260 | 32,950,000 | 32,950,000 | 32,950,000 | 32,950,000 | 32,950,000 |
| 의료보호 | 0 | 0 | 0 | 0 | 0 | 0 |
| 새 마을 | 244,905,740 | 226,000,000 | 226,000,000 | 226,000,000 | 226,000,000 | 226,000,000 |
| 토지구획 | 7,314,266,169 | 11,857,621,000 | 11,857,621,000 | 11,857,621,000 | 11,857,621,000 | 11,857,621,000 |
| 영 세 민 | 511,495,916 | 370,000,000 | 370,000,000 | 370,000,000 | 370,000,000 | 370,000,000 |
| 교통사업 | 784,406,252 | 2,472,845,000 | 2,472,845,000 | 1,737,880,000 | 1,737,880,000 | 1,737,880,000 |
| 경영사업 | 6,768,201,165 | 6,251,153,000 | 6,251,153,000 | 6,251,153,000 | 6,251,153,000 | 6,251,153,000 |

□ 문 제 점

-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의 경우 정확하게 처리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제외하여야 순세계잉여금이 되나, 명시이월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본 예산 수립후 실제결산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세입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출예산에 비하여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원칙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사항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가지는 예산대 결산의 상호작용에 따른 통제의 목적에 배치되며, 또한 세입예산 전체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개선방안

- 예산의 편성 및 추경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시에 유사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에서 계수정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있는 과목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도세관련 재정보전금 교부액의 적정성 검토

□ 현 황

○ 도세의 징수액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 3%이외에 재정보전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도내의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배부기준은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제정 2000. 3. 20 조례 제2977호)에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보전금의 자원 : 인구 50만 이상의 시 도불입금액(공동시설세 제외)의 47%
- 재정보전금의 종류
 - 일반재정보전금 :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보전금
 - 특별재정보전금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 재정결함금액(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세의 50%에서 도가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합한 금액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보전금
- 재 원
 - 일반보전금 : 재정보전금 자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일반재정보전금 : 일반보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 특별재정보전금 : 일반보전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배분방법

- 일반재정보전금 : 자원의 60%는 해당월의 인구수 기준으로 배부하고 40%는 해당월을 도내 도세징수액비율에 따라 배분함
- 특별재정보전금 : 재정결함금액이 있는 시군의 재정결함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결론적으로 부천시가 배분받을 수 있는 기준 배분율은 도세일반보전금으로 도 불입금액(공동시설세 제외)의 42.3%(47%×90%)입니다.

○ 2001년도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의 수령액은 비율로 계산하여 42.8%(70,545,936천원/164,726,088천원)로 적정액을 수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월 재정보전금의 수령시 이러한 비율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선방안

- 부천시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직정배분액이 결론적으로 42.3%이므로 실제 수령시에 배분율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차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의 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장기 미회수중인 세외수입 대처방안

□ 현 황

- 각구의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중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적시에 회수가 안되고 장기간 몇 년에 걸쳐 소액이 회수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중 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장기 미회수 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자동차과태료, 폐기물과태료 및 오수분뇨위반과태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문 제 점

- 적시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당사자도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독촉장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구청의 세외수입이 작아지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제재가 없어지므로 환경보호차원에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 개선방안

- 비산먼지등과 관련한 오수분뇨위반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미수납되고 있는 과태료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검토하여 적시에 세외수입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요망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미리 결손처분을 하고 회수가 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요망

4). 기 타

〈수입증지대금 지연 불입〉

□ 현 황

○ 원미구 건설과

(단위 : 원)

| 정수결의일자 | 정수결정액 | 불입일자 | 지연일수 |
|-------------|---------|-------------|------|
| 2001. 6. 22 | 132,000 | 2001. 6. 25 | 2일 |
| 6. 29 | 101,000 | 7. 3 | 3일 |
| 7. 3 | 87,000 | 7. 5 | 1일 |
| 11. 2 | 62,000 | 11. 5 | 2일 |
| 11. 29 | 98,000 | 12. 1 | 1일 |
| 계 | 480,000 | | |

□ 문 제 점

- 부천시 수입증지조례제20조1항 규정에는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만에 금고에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1일 ~ 3일까지 480천원 지연 불입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 부천시수입증지조례규정을 숙지하여 증지대금은 다음날 불입하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등 체납액 정리 소홀》

□ 현 황

○ 구청(건설과)

(단위 :천원)

| 구청별 | 체납액 | | 압류 | | 순수체납액 | |
|-----|-------|---------|----|---------|-------|---------|
| | 건수 | 체납액 | 건수 | 체납액 | 건수 | 체납액 |
| 계 | 2,117 | 766,868 | 22 | 146,053 | 2,095 | 620,815 |
| 원미구 | 1,744 | 447,968 | 4 | 3,656 | 1,740 | 444,312 |
| 소사구 | 131 | 53,088 | 12 | 3,547 | 119 | 49,541 |
| 오정구 | 242 | 265,812 | 6 | 138,850 | 236 | 126,962 |

□ 문 제 점

- 도로사용료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득측고지 발부후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강제 징수 절차를 이행하는등 다 각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등 체납액 정리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 민원부서와 협조하여 관허허가시, 또는 재증명 발급시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집중 득려반을 편성 징수하시고,
- 거소 및 재산조회를 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8조,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하여 채권확보에 철자를 기하기 바랍니다.

iv.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1) 세외수입실무자 전문성 강화

□ 현 황

- 원미구청에서는 세외수입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체납정리 실무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실무교육은 세외수입의 개념, 종류 및 세외수입의 부과부터 징수까지의 절차와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등의 개괄적인 내용에서부터 체납처분의 방법 및 실무사례를 예시하였으며, 결손처분방법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세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거의 결산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원미구청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교재의 배포를 통해서 표준화되고 정확한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체납정리실무 교육교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서식을 나열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미구청의 사례는 세외수입관리의 우수사례이며, 타 구청에서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세출결산

1. 농산물직거래장터 폐쇄에 따른 사후관리(농산지원사업소)

□ 현 황

- 시는 원미구 중동 1141번지에 부지 1,695평 매장면적 286평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부천시가 운영하고, 부천농협이 협조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1999년 11월 9일에 개장하였습니다.
- 중동 1141번지는 미매각 상업용지로 매각시에는 직거래장터의 이전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2001년 12월 10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2002년 2월 20일까지 농산물직거래장터 폐쇄를 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년이내에 타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며, 자매결연 시군과의 신뢰도에 차질 우려 및 시설투자비의 회수곤란등으로 5억원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위탁운영업체인 부천농협 주차장부지의 확보가 있어야만 이전할 경우에도 운영하겠다고 함에 따라 농산물직거래장터가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 문 제 점

- 중동 1141번지는 미매각 상업용지로 매각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전용지 및 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최초에 장터를 기획하여야 하나 이러한 대책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중간 사업 종료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사용하던 냉방기등 다수의 집기 비품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개선방안

-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업의 시작과 종료에 대하여 검토가 모두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종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의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II. 내동(내촌)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 현 황

- 오정구 내동 294, 295번지에 내동공원(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득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예산 또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조달된 사업임

□ 문 제 점

-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도 득하지 않았고 예산도 의회에서의 문제점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각지대인 공영개발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조달 추진된 사항임

□ 개선방안

- 중기지방재정제도는 5억단위로 재정계획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즉흥적, 선심성 사업의 지양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기본운영계획인바 추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며 의회의 예산안 제출시 일정 금액 이상의 특별회계 지출내역도 상세히 밝혀 투명한 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6. 기 타

1.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문제점

□ 현 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시 고강동 공영정류장설치사업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전입금 4,718,587,000원(도시계획세의 10%)
 - 국고보조금 2,002,000,000원
 - 총 합 계 6,720,587,000원그러나 이 사업의 계속비이월의 예산현액은 6,720,58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문 제 점

-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업비 지출시 차액이 다른 세입예산부분에서 전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 선 방 안

- 예산편성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